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60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13. 11.

제 출 자 : 달성군



## 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관내 위치한 비슬산 군립공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군립공원위원회와 관련된 「자연공원법」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, 이를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여 군립공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군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군립공원위원회 특별위원의 대상 조정 및 의결권 제한(안 제2조)
- 나. 군립공원위원회 특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(안 제3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연공원법」 제9조, 같은법 시행령 제8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 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 - (2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 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4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3. 10. 21. ~ 11. 11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달성군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”를 “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”라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국장·단장”을 “공원업무담당국장”으로 하며,

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삭제하며,

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같은 조 제4항제1호로 하며,

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

제2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동조제4항제2호”를 “같은조제4항”로 하며, “한다.”를 “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사고가 있을 때에는”를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공무원업무담당 6급”을 “공무원업무담당”으로 하고,  
“관련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.”를 “공무원업무담당 주무관이 한다.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 「자연공원법」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<u>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(이하 위원회 라 한다)</u>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 <u>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2조(조직) ① <u>대구광역시 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당연직 위원은 <u>국장·단장</u> 및 기획감사실장, <u>공원녹지과장</u>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	<p>③ ----- <u>공원업무담당국장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④ (생략)</p> <p>1. <u>당해 공원지역은 관할하는 읍·면장</u></p> <p>2. <u>당해 공원지역 면적의 1,000분의 10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</u> 군수가 위촉하는 자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1.----- ----- -----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2. <u>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</u> 군수가 위촉하는 자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.</p> <p>제3조(임기)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 임기는 2년으로 <u>한다</u>.</p> <p>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</p> <p>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<u>사고가 있을 때에는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8조 ① (생략)</p> <p>② 간사는 <u>공원업무담당 6급, 서기는 관련 소속공무원중에서</u> <u>군수가 임명한다</u>.</p>	<p>⑤----- ----- -----, <u>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</u>.</p> <p>제3조(임기)----- ----- <u>같은조제4항</u>----- -----<u>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</u>.</p> <p>제4조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</u> -----.</p> <p>제8조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공원업무담당, -----</u> <u>공원업무담당 주무관이 한다</u>.</p>

##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### □ 자연공원법 제9조(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

-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두며,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(包括承繼人)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### □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(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·운영기준)

제9조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군립공원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·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군수"라 한다)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
  - 가.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
  - 나.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·사업자 등 이해관계인
  - 다.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특별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가 된다.
  - 가. 삭제 <2003.4.4>
  - 나.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
  - 다.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
4.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.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5. 위원장·부위원장의 직무, 위원·특별위원의 임기, 간사, 군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립공원위원회에 준용한다.